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 동 협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1-39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1년 4월 일

발 의 자: 김동협, 신낙형, 박성호, 윤유선

이충현, 송순효, 강선영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집합금지·영업제한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
겪고 있는 소상공인 특히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재창업, 업종전환
등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 개정내용

가.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. (안 제14조의1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제3조

나. 협조부서: 지역경제과

다. 입법예고: 2021. 4. 5.~4. 10.

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의1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서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

1. 재창업 지원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원
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의1에 따른 지원은
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4조의1(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)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(이하 “폐업 소상공인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이 경우,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강서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재창업 지원</u> <u>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재난발생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금 지원</u> <u>3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

□ 「중소기업기본법」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“중소기업시책”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중소기업”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 -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-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-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

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.

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-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